

●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510호

‘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09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

건설신기술 지정

1. 신기술개발자

신청인	법인명(성명)	한국파라마운트㈜(최윤희, 신순주)		
	주 소	우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69길7, 909호 (여의도동, 충무빌딩)		
	전화번호	02-784-8599	팩스번호	02-784-0287
신청인	법인명(성명)	주식회사 테코이코(최윤희, 안성희)		
	주 소	우07333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69길7, 909호 (여의도동, 충무빌딩)		
	전화번호	02-783-8599	팩스번호	02-3775-3753

2. 신기술의 개요

- 지정번호 : 제939호
- 명 칭 : 반응성 GCL차수재를 이용한 제방표면 차수공법
- 기술분야 : 토목 / 토목구조물 보수보강(포장 보수제외) / 기타 구조물 보수보강
- 신기술의 내용

이 신기술은 COOH, PAA, HDTMA,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(reactive geosynthetic clay liner)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고, 이의 포설 이음부를 벤토나이트로 처리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임

- 신기술의 범위

COOH, PAA, HDTMA, CaOMgO를 함유하는 반응성 GCL차수재를 제방의 표면에 포설하여 제방을 차수하는 공법

3.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

가. 보호기간 : 고시일로부터 8년

나. 보호내용 :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

-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
-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,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
-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

4. 신기술품셈

시공절차 및 주요공정

차수재 포설 → 토사 포설 → 부직포 포설 → 사석 포설

신기술 품

1. 차수재 포설

(㎡당)

구 분		규 격	단 위	수 량
인력	방수공		인	0.002
	보통인부		인	0.001
장비	크레인		hr	0.002
재료	GCL 차수재		㎡	1.1
	벤토나이트 과립	#20~#200(20kg)	ton	0.5

[주] ① 본 품은 GCL 차수재 포설 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

- ② 본 품에는 소운반, 포설, 고정, 연결 및 접합, 이음부처리, 정리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.
- ③ 본 품은 수직고 50m 이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, 높이 할증은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.
- ④ 크레인의 규격은 작업여건(작업위치 및 높이 등)에 따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.
- ⑤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,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

2. 토사 포설

(㎡당)

구 분		규 격	단 위	수 량
인력	보통인부		인	0.001
장비	굴삭기	1.0㎡	hr	0.025
재료	벤토나이트 분말	24ml/2g	㎡	0.326

[주] ① 본 품은 GCL 차수재 하단에 설치되는 벤토나이트 혼합토(두께 약100cm) 포설작업 및 GCL 차수재 보호용 양질토(두께 10cm 이상) 포설작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.

- ② 본 품에는 터파기, 토사채취, 체가름, 벤토나이트 혼합토 교반, 혼합토 및 양질토 운반, 혼합토 및 양질토 포설, 다짐, 면고르기 작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.
- ③ 벤토나이트 혼합토 교반 장비(스테이빌라이저) 및 다짐 장비(플레이트 콤팩터)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.
- ④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된 것이며,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%로 계상한다.